

2006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 금연정책의 전망

2006.4.21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 사무관 조경숙

## I. 서론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 배경〉

- 흡연의 폐해가 알려진 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 전세계 흡연인구 12억명, 매 년 흡연으로 500만명 사망, 2030년에는 1천만여명으로 증가될 전망(WHO, 2004)
- 전체 흡연자의 80%가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으므로 향후 이들 국가의 흡연으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각할 전망, 선진국도 예외는 아님
- 최근 무역 자유화, 글로벌 마케팅, 위조 및 밀수담배의 거래, 초 국경간 담배광고 등 담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됨에 따라
- 각국의 흡연규제정책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경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흡연 문제는 저개발국가와 개발도상국 뿐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

보건복지부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추진 경위〉

- 1998년 WHO는 Tobacco Free Initiative 조직
- 1999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추진
- 2003년 5월 제53차 WHO 총회에서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안 통과(2차례 실무회의, 6차례 협상회의)
- 2003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년간 공식적인 서명 절차 가진 결과, 192개국 중 168개국이 서명하였고, 120여개국이 비준
- \* 우리나라 2003. 7. 21 서명, 2005. 5. 16 비준(66번째국가)
- 2004년 11월 30일 40번째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년 2월 27일에 정식 국제법으로 효력 발생
- 2004년 6월, 2005년 2월 2차례에 걸쳐 정부간 작업반 실무회의 개최(재정 및 행정규칙)
- 2006년 2월 첫번째 당사국 총회 개최

보건복지부



## II. 협약의 내용과 추진 현황

### 〈협약의 구성 내용〉

- 전문 : 담배의 폐해 인식, 국제협력의 중요성, 담배업계에 대한 경계, 협력과 참여, 협약의 이행 시 개발도상국·아동·여성·청소년·원주민 등에 대한 고려, 담배 불법거래, 광고·판촉·후원의 악영향에 대한 고려 등을 상기
- 협약의 본문은 11개의 장과 38개의 조항으로 구성
- 주요 내용 : 담배규제를 위한 담배수요 감소 조치와 담배공급 감소 조치
  - 담배수요 감소조치: 가격 및 조세정책, 간접흡연 노출로부터의 보호정책,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금연 교육·홍보 및 금연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 담배공급 감소 조치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 담배산업 종사자의 대체활동 지원 등
  - 기타 : 환경보호, 담배회사의 책임, 정보교류 및 협력, 협약 당사국의 재정 및 행정규칙

보건복지부

# 1. 담배의 수요감소 조치

## 가. 가격 조치 : 가격 및 조세(제6조)

- 협약 내용
  - 조세정책과 가격정책
  - 국제 여행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면세·무관세 담배제품의 판매·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
- 현황 및 조치 내용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담배 판매 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통한 가격 인상은 사실상 어려움
  -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표 1)
    - \* 2004년 12월 30일 조세와 부담금 등을 인상하여 담배 가격을 감당 500원씩 인상
  - 면세 담배 폐지
    - \* 200원 이하의 저가담배 공급중단('06.7.1 예정)
    - \* 2009년까지 군 면세 담배의 단계적 폐지

☞ 보건복지부

조항	주요 내용	국내 법령 및 내용	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	향후 방향 및 제언
제 6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격 및 조세정책 &lt;에서사할&gt;</li> <li>· 담배가격 및 조세정책</li> <li>· 면세·무관세담배의 판매·수입 금지 또는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판매가격신고제 (담배사업법제18조)</li> <li>○조세 및 부담금</li> <li>·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지방세법 제229조 및 제260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li> <li>○면세담배(지방세법 제229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가격 인상</li> <li>· 담배가격 500원 인상 ('04.12.30)</li> <li>· 500원 추가 인상 추진(국회계류 중)</li> <li>○면세담배 일부 폐지</li> <li>· 200원 이하 저가 담배의 면세조치 폐지('06.7)</li> <li>· 군면세담배의 단계적 폐지('06-'09) 합의('06.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가격 인상</li> <li>·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마련 필요</li> <li>○면세담배 폐지 및 규제강화</li> <li>· 군뿐 아니라 전경 등에 제공하는 면세담배도 폐지</li> <li>· 면세점 등의 담배에 대한 면세조치도 규제</li> </ul>

☞ 보건복지부

**표1.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현황**

구분	'04인상전	인상분	'04인상후	'05인상후	근거	
조세 및 부담금	건강증진기금	150	204	354	558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510	131	641	772	지방세법 제229조
	지방교육세	255	66	321	387	지방세법 제260조
	업연초생산안정화기금	10	5	15	20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폐기물부담금	4	3	7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부가가치세	136	41	177	218	부가가치세법 제1조
	소 계	1,065	450	1,515	1,965	
유통마진	150	50	200	250		
제조원가	285	0	285	285		
담배가격	1,500	500	2,000	2,500		

보건복지부

**표 2.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성인 남성의 흡연율 및 금연율**

단위 : %

구분	2004. 9월/ 담배가격인상전	2005. 1월 말/ 담배가격인상 1개월후	2005. 3월 말/ 담배가격인상 3개월후	2005. 6월 중순/ 담배가격인상 6개월후	2005. 9월 중순/ 담배가격인상 9개월후
금연율(고려대)	-	8.3%	9.7%	11.0%	-
흡연율(갤럽)	57.8%	-	53.3%	52.3%	50.3%

자료 : 1) 김원년 등. 금연정책의 분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5

2) 한국갤럽. 흡연실태 조사 보고서. 2004.9, 2005.3, 2005.6, 2005.9

**담배가격 인상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친 영향**

- 금연율 : 11.7%(성인 11.0%)
- 흡연량 감소 : 20.5%
- 담배수요 가격탄력도 : -1.56(성인 -0.39)

보건복지부

## 나. 비가격 조치

### 가)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제8조)

- 협약 내용
    - 실내 작업장, 대중 교통수단, 실내 공공장소,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 현황 및 조치 내용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당시 금연구역에 대한 규정을 마련 한 이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쳐
    - 정부청사, 보육시설, 학교, 대형건물의 사무실,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게임방·PC방, 대형음식점 등에 금연구역 설치
- \* 최근 지방청사와 소규모 사무실 및 공장에 금연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추진 중

2 보건복지부

조항	주요 내용	국내 법령 및 내용	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	향후 방향 및 제언
제8조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국민건강증진법 제 조 제항 및 시행규칙 제 조 및 제 조 중이 이용하는 시설 · 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 교통시설, 체육시설, 중앙청사, 대형 사무실, 극장 등	○1995년 제정 · 2003년 개정 ○2006년 개정 : 금연구역 확대 · 지방청사, 소규모 사무실, 공장 등에 확대('06. 상반기 예정)	○금연구역 확대 · 실내 공공장소 전면 금연 · 실외 공공장소까지 확대

2 보건복지부

## 나) 담배제품의 성분 및 공개에 관한 규제(제9조 및 제10조)

- 협약 내용
  - 담배제품의 성분 및 그 배출물을 시험·측정하고 그 성분 및 배출물을 규제
  -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담배제품의 성분 및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및 일반인에게 공개토록 조치
  - \* 협약 당사국 총회는 앞으로 담배 성분에 대한 조사와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
- 현황 및 조치 내용
  - 니코틴과 타르의 성분표시 이 외의 다른 성분을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규제는 없음

22 보건복지부

조항	주요 내용	국내 법령 및 내용	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	향후 방향 및 제언
제 9 조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담배사업법 제26조의2(담배성분의 표시) 제2항·제3항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 측정기관 지정, 표시 방법 및 허용오차 범위, 측정기준 등		○향후 WHO에서 담배성분규제 및 공개를 위한 지침 마련 후 강화될 전망
제 10 조	○담배 제조·수입업자의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에 대한 정보 공개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4(측정 결과를 정부에 보고)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담배포갑지에 담배성분 공개) · 담배개비의 연기 성분에 포함된 니코틴 및 타르의 함유량		- 상동 -

22 보건복지부

## 다)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제11조)

- 협약 내용(3년 이내 시행)
  -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수단을 사용하여 담배제품을 홍보해서는 안됨
    - \* 오도문구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 금지
  - 담배제품의 갑포장, 묶음포장,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 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 경고문구는 주요면적의 30%를 의무화
      - \* 50% 이상의 크기 및 경고 그림 권고
- 현황 및 조치 내용
  - 담배갑 앞·뒷면 각각 30%의 이상의 넓이에 해당하는 사각형 안에 각각 1개씩의 경고문구를 기재

보건복지부

조항	주요 내용	국내 법령 및 내용	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	향후 방향 및 제언
제 11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제품의 포장(packaging) 포합 및 라벨에 대한 규제 (협약 발효 3년 이내 의무사항)</li> <li>·오도(저타르·라이트·울트라라이트·마일드 등) 표시 금지</li> <li>·경고문구(표시면적의 30% 이상, 주기적 문구교체)</li> <li>*권고사항: 50%이상 표기, 그림경고표시</li> <li>·담배 분·배출물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제26조제1항(담배갑 앞뒤면 30%에 1개씩의 경고문구 표기)</li> <l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오도 가능성 표시 관련)</li> <li>◦ 담배사업법제26조 제2제1항(성분표시)</li> <li>·니코틴·타르양 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갑 포장뿐 아니라 외부 포장에 대한 표시 규제도 필요</li> <li>◦오도문구 규제 관련 조치 필요</li> <li>◦흡연경고 그림, 주기적 문구교체 등 흡연경고 표시 강화</li> </ul>

보건복지부



**라)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제13조)**

- **협약 내용(5년 이내 시행)**
  - 담배광고·판촉·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또는 규제
- **현황 및 조치 내용**
  -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행위를 금지
  - 담배의 포장과 그 내용을 바꾸어 판매하는 것 금지
  - 원칙적으로는 담배에 관한 광고·후원을 금지·제한

<허용되는 범위>

광고 및 광고물 등은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종류 및 특성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흡연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이어서는 아니됨

보건복지부

조항	주요 내용	국내 법령 및 내용	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	향후 방향 및 제언
제 13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제품의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금지 또는 규제(협약 발효 후 5년 이내)</li> <li>○의무사항</li> <li>·오도 가능성 있는 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li> <li>·광고(판촉·후원 포함)시 경고 문구 포함</li> <li>·직간접적 유인책 규제</li> <li>·담배업계의 광고·판촉·후원 비용을 정부에 공개</li> <li>·TV 등의 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또는 규제</li> <li>·국제 행사·활동 등에 대한 후원 금지 또는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금지 등)</li> <li>○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1항 및 제8조제3항(담배사업법제26조): 담배광고금지·제한및광고시 경고문구 표시원칙 규정</li> <li>○담배사업법제26조의4(담배판매촉진을 위한금품제공 등 금지)</li> <li>○비용공개규정없음</li> <li>○담배사업법시행령제9조제1항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4조(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행사를 제외한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 후원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제품의 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일부 규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배업계의 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규제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li> <li>○담배업계에 대한 비용 공개를 요구할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li> </ul>

보건복지부

**마) 금연 교육, 홍보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제12조 및 제14조)**

- 협약 내용
    -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보건 관계자, 지역사회 운동가, 사회 활동가, 미디어 전문가, 교육자, 정책결정자, 행정관료 등에 대한 교육 훈련
    - 공공, 민간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인식과 참여 권장
    - 담배중독 치료를 위한 진단·상담·예방·치료 프로그램 제공
  - 현황 및 조치 내용
    - 학교, 사업장, 군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금연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실시
    - 금연상담과 교육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어린이·청소년·대학생·여성 등 목표 집단을 세분화하여 TV, 인터넷,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금연캠페인 전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Quitline)
- \* 예산 증가: 7억('98년)→260억원('05년)→315억('06년)

보건복지부

조항	주요 내용	국내 법령 및 내용	최근 시행 및 강화 내용	향후 방향 및 제언
제 12 조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및 제25조 · 금연 교육·홍보 · 금연사업	○금연사업예산 확대(7억'98)→260억'05)→315억'06) · 대상자별로 다양한 금연 교육·홍보프로그램 확대('05) · 전문가 교육훈련프로그램 등	
제 14 조	○담배 중독 치료·금연을 위한 조치 시행	○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 금연사업	○금연클리닉시범사업('04)→246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05, 20만명) ○사업장, 학교, 군 등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민간 확대 방안 마련 · 부끄러워온 보험급여 검토

보건복지부



## 2. 담배의 공급감소 조치

### 가.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제15조)

- 협약 내용
  - 담배의 밀수·불법제조 및 위조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 관련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
  - 이를 위해 원산지 표기와 공급의 추적체계 마련, 허가제를 포함한 담배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규제하는 조치 등 권장
- 현황 및 조치 내용
  -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미흡하나 관세법에 의해 위조 및 밀수담배를 규제 가능
  -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제조·수입·도매업이 허가제로 되어 있고, 우편 및 전자거래 금지

2 보건복지부

### 나.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제16조)

- 협약 내용
  -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필요 시 연령 확인)
  - 선반 진열과 같이 직접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판매 금지
  - 자판기에 대한 접근 규제, 무상배포 금지, 날개 또는 소량 포장 판매 금지, 담배제품 형태의 물건 판매 금지 등
- 현황 및 조치 내용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필요 시 신분증 확인)
  -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지역(학교 등)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2 보건복지부



### 3. 환경보호·책임·정보교류 등

- 협약 내용
  -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 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
  - 담배의 규제를 위하여 보상을 포함하는 형·민사상 책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입법상의 조치를 취하거나 자국의 기존 법률을 촉진하는 것을 검토
  - 당사국간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

보건복지부

### 4. 협약의 행정 및 재정규칙

- 기본적으로 WHO의 행정 및 재정규칙에 따름
- 협약 상설 사무국은 WHO 내에 설치
- 의사결정
  - 투표권은 비준을 완료 후 90일이 경과한 당사국에 한함
  - 당사국은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4분의 3의 동의에 의한 의사결정, 예산 및 재정에 관한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

보건복지부

• 옵저버의 참석

- 협약 당사국이 아닌 WHO의 회원국과 WHO의 준회원국,

UN 회원국, UN 특별기구의 회원국,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은 협약 당사국 회의(public session)와 당사국 하부

기구의 회의에 투표권 없이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으며, 발언은 당사국들의 발언이 끝난 후에 가능

- 옵저버로 참석하기 원하는 NGO는 사전에 사무국에 신청

하고 당사국의 승인을 얻어 투표권 없이 협약 당사국 회의(public session)와 당사국 하부기구의 회의에 참석, 발언은 위에서 언급한 옵저버의 발언이 끝난 후 가능

보건복지부

- 첫 번째 회계기간(2006-2007)의 예산은 총 US\$ 8,010,000으로 이는 당사국 회의 개최(US\$ 2,100,000), 보고체계 마련 및 이에 대한 지원(US\$ 2,500,000), 보고서 작성(US\$ 665,000), 협약 관련 하부기구 운영 및 행정 지원(US\$ 1,180,000), 가이드라인과 의정서 마련 및 기타 활동(US\$ 1,565,000)에 소요될 전망, 각국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부담
- 우리나라는 총액의 2.78175%인 US\$ 222,818을 분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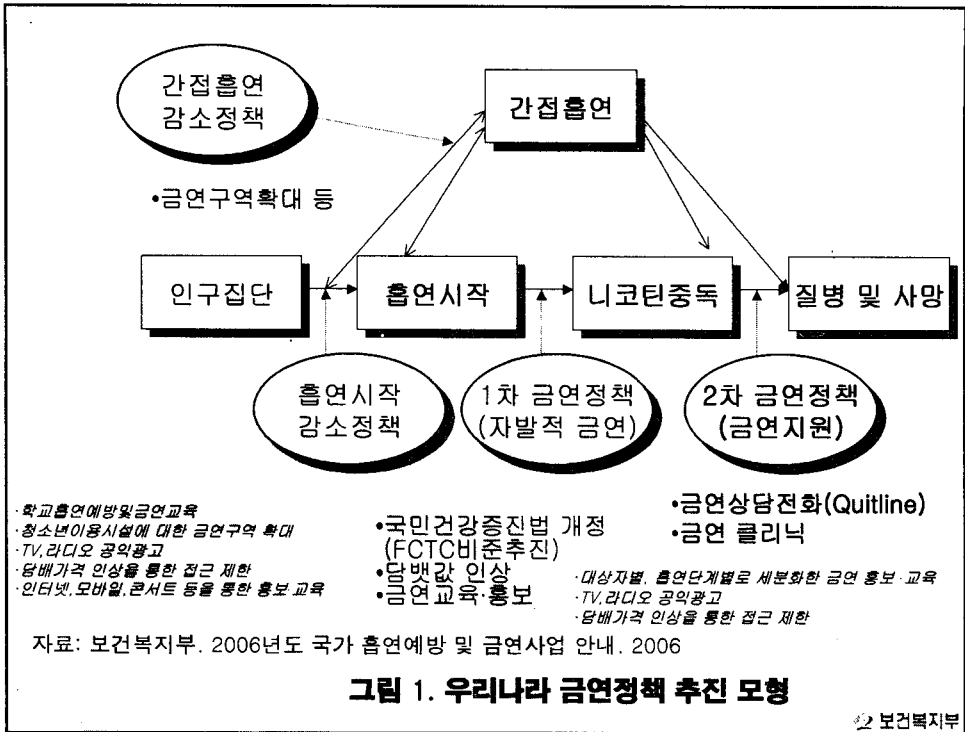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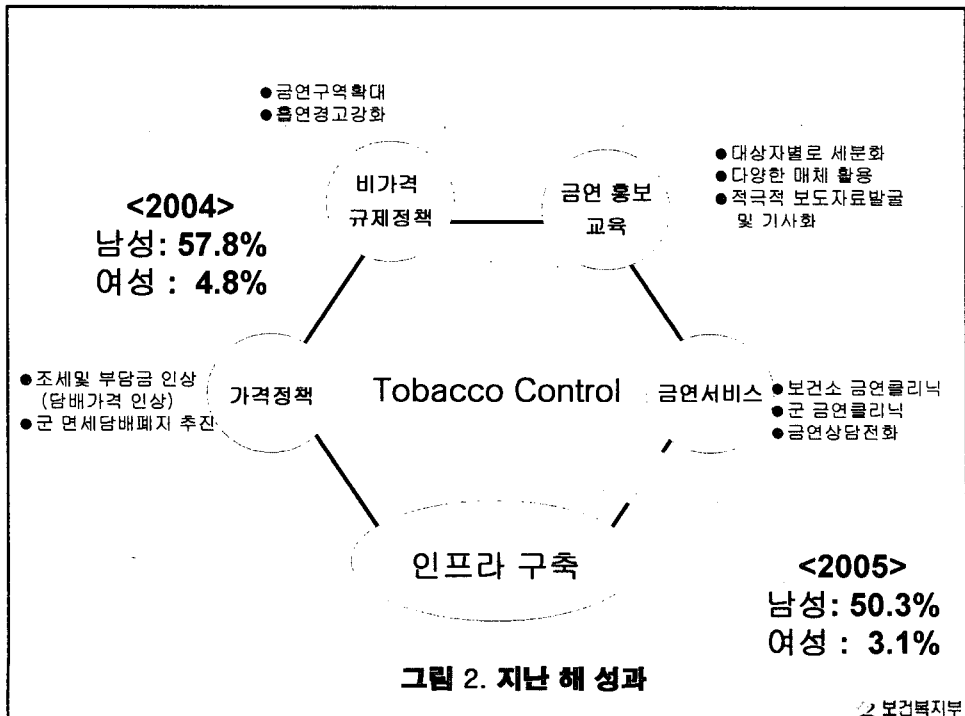
## 1. 정책의 목표 및 방향

- 목적 :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목표 : 201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30%까지 낮춘다
- 세부 목표
  - 흡연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흡연 시도 평균연령을 높이고, 흡연시작 평균 연령 높인다
  -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인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시도율과 금연결심율을 증가시키며, 금연상담 또는 치료경험율을 높인다
  -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하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노출율을 감소시킨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2. 담배의 수요감소 조치

- 가격정책
  -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
  - 면세 담배 폐지 조치
    - \* '09년까지 단계적으로 군 면세담배 폐지,
    - \* 이 외의 면세 담배(전투경찰 공급, 면세점)의 폐지 방안 마련
  - 주기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간접흡연 감소 조치
  - 실내 공공장소의 금연 구역 확대
  - 실외 공원, 놀이동산, 실외 체육시설 등 옥외 공공장소에 대한 흡연 규제 강화

보건복지부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 흡연경고표시 강화
  - 경고문구 교체 게재
  - 흡연의 폐해에 관한 명확한 내용 게재
  - 사각형 테두리와 글씨를 담배갑 포장지와 보색인 색상을 이용하여 눈에 잘 띄도록 하는 방안 마련
  - 현행 30% 비율로 규정된 사각형의 크기를 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비율인 50%로 확대, 경고그림 넣는 방안 마련
  - 금연상담전화 번호를 담배갑에 표시
  - 오도문구(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규제 방안 마련
  - 담배제품의 각 갑포장·묶음포장·기타 외부 포장 및 라벨도 담배사용의 유해성을 기술하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CIGARETTES HURT BABIES**


Tobacco use during pregnancy reduces the growth of babies during pregnancy. These smaller babies may not catch up in growth after birth and the risks of infant illness, disability and death are increased.



**WARNING TOBACCO SMOKE HURTS BABIES**

Tobacco use during pregnancy increases the risk of preterm birth. Babies born preterm are at an increased risk of infant death, illness and disability.


Health Canada



**WARNING CIGARETTES CAUSE LUNG CANCER**

85% of lung cancers are caused by smoking. 80% of lung cancer victims die within 3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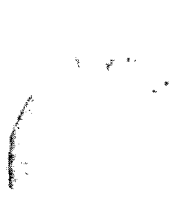
Health Canada



**WARNING CIGARETTES CAUSE MOUTH DISEASES**

Cigarette smoke causes gum disease, gum disease and tooth loss.

Health Canada



**WARNING TOBACCO USE CAN MAKE YOU IMPOTENT**

Cigarettes may cause sexual impotence due to decreased blood flow to the penis. This can prevent you from having an erection.

Health Canada

Estimated Deaths in Canada, 1996

Murders - 510	<b>WARNING EACH YEAR, THE EQUIVALENT OF A SMALL CITY DIES FROM TOBACCO USE</b>
Alcohol - 1,500	
Car accidents - 2,900	
Suicides - 3,900	
<b>Tobacco - 46,000</b>	

Health Canada

- 담배광고·판촉·후원 규제 및 담배성분 공개 강화
  - 담배의 광고·후원·판촉행위의 포괄적 규제
  - 담배성분 공표 및 감시
- 금연 교육·홍보 및 금연 프로그램의 활성화
  - <대상자별로 세분화한 금연 홍보·교육 강화>
    - 여성·아동·청소년·대학생·군인 등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대상자에게 적합한 금연홍보·교육 강화
    - 이용 가능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강화
  -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 확대>
    -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 민간의료기관의 금연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부프로피온 건강보험급여 방안 마련 등)
    - 금연 상담전화(Quitline)의 차질없는 운영 및 확대
    - 부건의료인의 금연권고를 위한 참여 방안 마련

### 3. 담배의 공급 감소 조치 등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
-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 강화
- 담배경작자·판매인 등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 책임(담배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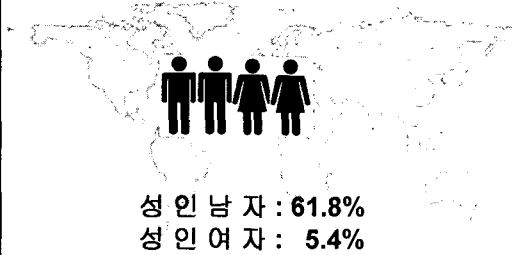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 4. 담배규제를 위한 역량 강화

- 정부 조직 확대 및 역량 강화
- 모니터링·연구 활성화
  - 흡연관련 조사·통계 강화를 통한 정책 수립 및 평가
  - 흡연관련 연구의 체계화 및 활용도 제고
  - 청소년 담배판매행위, 금연구역, 담배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WHO, CDC 등 국제기관과 협력 강화
- NGO 연대를 통한 담배산업 견제
  - 보건의료인, 지역사회운동가, 사회 활동가, 미디어 전문가 등의 참여 강화
  - 담배규제에 있어 공공, 민간기관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2001년>



<2010년>



보건복지부

“담배없는 세상을 위하여...”



- 감사합니다 -

보건복지부